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41
----------	-------

발의연월일 : 2025. 9. 19.

발 의 자 : 이연희 · 박정현 · 장종태
김정호 · 송재봉 · 임미애
강준현 · 정준호 · 박 정
염태영 · 홍기원 · 김남희
박상혁 · 신영대 · 이광희
김기표 · 정태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신호 운영 최적화 등

교통 효율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 및 2차 사고 방지 등 교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에 ITS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스마트 미래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그런데 현재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법적 근거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중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조항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행정적 계획수립·시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촉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진흥 정책 등의 내용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미래의 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별도의 법률로서 각종 산업 발전 및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첨단 교통기술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고,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 우수 인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원, 자격제도 운영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9조부터 제2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 교통기술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교통체계”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란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이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이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및 서비스의 융복합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이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등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지역·기간·규모 등을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지원 및 발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연구 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에 관한 사항

5.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국제협력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내용
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지능형교통체계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7조(통계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

기관의 장,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8조(기술개발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연구개발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에 대한 평가 사업
3.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협력, 이전 등의 실용화 사업
4.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2. 지능형교통체계 구성 장비에 관한 표준화
3.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 제공자 간 호환성 확보에 관한 표준화

4. 지능형교통체계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화

5.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간·규모 등을 한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술의 국제공동연구 협력 및 해외 현지화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해외 지능형교통체계사업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 지원

4.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가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창업 및 성장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그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및 그 밖의 상담
3.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 지원
4.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5. 지능형교통체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지원
6. 지능형교통체계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 기회 제공
7. 유상 지능형교통체계 정보의 무상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지능형교통체계 우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
계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자, 관리청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우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우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장비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2.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 지원
3. 지능형교통체계 우수 인증
4.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예산 및 설비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교통체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을 조성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단체 등에게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지능형교통체계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5. 지능형교통체계 직무표준 및 자격제도 운영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

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표창)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또는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지원기관이나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담당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